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○ 제출일자 : 2021년 6월 4일

○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1년 6월 8일

2. 주요내용

○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장의 명칭과 조문의 내용을 변경 (안 제5장, 안 제10조)

- 주민세(균등분) → 주민세(개인분)

○ 일부 주민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 내용 삭제 및 정비 (안 제10조)

- 개인사업자 및 법인(균등분/시·군세)→사업자(사업소분/구·군세)

○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상위법령 인용 규정 변경(안 제22조)

- 지방세법 제147조제3항 → 지방세법 제147조제6항

3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 조례안은

► 상위법령인「지방세기본법」과「지방세법」의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○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► **안 제5장 제10조에서는**「지방세법」제74조의 개정[2]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됨에 따라 장의 명칭과 조문 중 "균등분"을 "개인분"으로 변경하고,

개정된「지방세기본법」제11조[3]에 따라 구세로 전환된 개편 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관련 조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,「지방세법」제78조[4]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명시하였음.

---

2) **지방세법 제74조(정의)**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개 정 前		개 정 後
1. "**균등**분"이란 **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**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2. "**재산**분"이란 **사업소**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3. "종업원분"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	➡	1. "**개인**분"이란 **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**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2. "**사업소**분"이란 **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**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 3. "종업원분"이란 **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**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
3) **지방세법기본법 제11조(주민세의 특례)** 광역시의 경우에는「지방세법」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**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** 한다.

4) **지방세법 제78조(세율)**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.

※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역

개 정 前

구 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균 등 분 (시·군세)	개 인	1만원
	개인사업자	5만원
	법 인	5~50만원
재 산 분 (구·군세)	사업자	연면적 330㎡ 초과 : 250원/㎡
종업원분 (구·군세)	사업자	월급여액 ×0.5%

➡

개 정 後

구 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균 등 분 (시·군세)	《변경 없음》	
사업소분 (구·군세)	사업자	► 기본세액 : 5~20만원 ► 연면적 330㎡ 초과 : 250원/㎡
종업원분 (구·군세)	《변경 없음》	

► **안 제22조에서는**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「지방세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규정을 변경하였음.

– 지방세법 제147조제3항 ➡ 지방세법 제147조제6항

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► **이 개정 조례안은** 세분화된 주민세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여 명확성을 더하고 사업소분 주민세의 일부 세율을 인하하는 등 시민의 납세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「지방세기본법」과「지방세법」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.

○ 이상으로 **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